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 개선(법 제9조, 법 제9조의2 신설)
 가축의 사육단계에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도입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제정 및 작업장 적용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축산물의 포장유통의무 근거 마련(법 제10조의2 신설)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축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판매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축산물 위생에 대한 사후 관리체계 개선(법 제24조제1항·제30조제1항 및 제47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던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를 농림부 장관에게 하도록 하고, 영업정지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영업자 등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며,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함.

라. 축산물에 대한 위해평가제도 도입(법 제33조의2 신설)
 농림부장관은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대한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축산물의 경우에는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 또는 진열하는 것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6년 3월2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한덕수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국무위원
정보통신부장관

●법률 제7916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6호중 “第36條의3 및 第36條의4”를 “제36조의3 내지 제36조의5”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7호중 “第36條의3 및 第36條의4”를 “제36조의3 내

지 제36조의5”로 하며,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5호중 “第36條의3 및 第36條의4”를 “제36조의3 내지 제36조의5”로 한다.

제3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5호를 삭제하며, 동조제2항 본문중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1항제4호의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한다.

제36조의4를 제36조의5로 하고, 제3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4(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①전기통신사업자는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원기준의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고한 지원기준과 다르게 지원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전기통신사업자는 지원기준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영업장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계약체결 등을 대리하는 자의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그 시행일부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이용기간과 사용실적, 지원기준에 따라 실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④전기통신사업자는 기존에 가입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새로이 가입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

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으로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기준에 따라야 하며, 동일한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전기통신사업자는 일정기간 동안 이용자의 가입시점 및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고, 구입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통신위원회가 확인요청을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확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지연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기간의 산정방법,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기준의 게시, 불리하게 변경된 지원기준 및 이용기간 등의 고지에 관한 사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관리 대상의 구체적인 범위, 정보의 관리기간 및 제공방법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의5(중전의 제36조의4)제1항중 “第36條의3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제36조의3의 규정에 따른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第36條의3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各號”를 “각 호”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본문중 “第36條의3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제3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한다.

제37조의3중 “第36條의3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제36조의3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행위 또는 제36조의4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한다.

제73조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6조의4제1항·제2항 또는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各號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9호중 “第36條의4第2項”을 “제36조의5제2항”으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②(유효기간) 제36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 ③(지원기준 신고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한 지원기준은 제36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신고한 날부터 시행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유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 금지규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되, 그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예외를 확대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법 제36조의4제1항 신설, 법 부칙 제2항)
전기통신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 지

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그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간으로 함.

- 나.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 금지의 예외(법 제36조의4제1항 단서 신설)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 등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 지원의 기준·한도 등의 신고(법 제36조의4제2항)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함.

- 라. 별정통신사업자의 지원 제한(법 제36조의4제5항 신설)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는 당해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같은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도록 함.

마.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법 제36조의4제6항 신설)

전기통신사업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자의 가입시점 및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구입비용의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인

2006년 3월24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 한덕수

국무위원
정보통신부장관

◎법률 제7917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46조의3제1항 중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이하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안전진단수행기관”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15인 이상의 정보보호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2. 최근 3년 이내에 정보보호컨설팅을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제46조의3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를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한다.

제46조의3제4항 중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는”을 “안전진단수행기관이”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46조의3제5항 중 “의하여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가”를 “따라 안전진단